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1. 9. 3.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1년 7월 13일

나. 발 의 자: 오현숙 의원 외 7명

다. 회부일자: 2021년 8월 27일

라. 상정일자: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2021. 8. 31.)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오현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설치기준(안 제5조 ~ 제6조)
- 관리주체 및 안내문 게시·부착(안 제7조 ~ 제8조)
- 안전점검, 관리대장의 작성·관리(안 제9조 ~ 제10조)
-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안 제11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 본 조례안은

-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안전으로 총 12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됨.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2019. 7. 15.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 과제 중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지방의회에 제안·권고한 바 있는데, 여기에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 (7페이지)

- 체육시설 관련 조례의 적용 대상에 야외 운동기구를 포함하고, 관리기준 구체화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
- 야외 운동기구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의무규정 신설  
↳ 「지자체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반영

####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였음.

-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함.
- 안 제7조, 제8조는 관리주체 및 안내문 게시 규정으로 야외운동기구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함.
- 안 제9조, 제10조는 안전점검 및 관리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 실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점검결과 및 관리대장 작성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안 제11조는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 보상을 위해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야외 운동기구 안전 관리 개선방안」을 충실히 반영한 안건임.
- 종전에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운영은 각각의 관리부서 주관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 관리부서와 총괄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대장 작성, 안내판 부착 및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신청 의무화 등을 조례에 명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또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원, 하천, 산책로 등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타당하게 제출된 안건으로 사료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오현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367 호
----------	---------

발의년월일: 2021년 8월 일  
발 의 자: 오현숙 의원 외 7명

## 1. 제안이유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설치기준(안 제5조 ~ 제6조)
- 다. 관리주체 및 안내문 게시·부착(안 제7조 ~ 제8조)
- 라. 안전점검, 관리대장의 작성·관리(안 제9조 ~ 제10조)
- 마.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안 제11조)

## 3. 제정안 : “별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반영
- 다. 입법예고(2021. 7. 16. ~ 7.20.) 결과 :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구청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2.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문화재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표]

안내문(제8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기 구 명	
설치년월	
관리부서	
연 락 처	

[별지 서식]

(앞면)

##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제10조 관련)

관리번호		영등포구 -			
시 설 명					
위 치					
설치면적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설치일자	년	월	일		
사 업 비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설치현황	“전경사진”				
	기 구 명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뒷면)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내용
		직급	성명	
관리현황				